

국 세 기 본 법 해 설



글 / 임현석 세무사

I. 기한연장의 사유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세금계산서 및 장부 일련번호가 소실되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 경우 신고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세무에 관련된 각종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및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을 때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한연장의 사유로는

-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③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종인 때
- ④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만 해당)
- ⑤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된 때 등이다.

이러한 기한연장은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연장되는 경우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연장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장사유가 타당한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서류가 납세자에게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다.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세무서에서 발송했으며 납세자에게 도착한 날에 이미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지나버렸거나 도착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납부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는 날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기전 징수를 위해 고지를 한 경우 고지서가 도착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그 도착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그 고지서의 도착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납부기한이 된다.

* 관계법규 : 국세기본법 제6조, 제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부기기자서의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기재사항 중 누락이나 오류사항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를 올바르게 고쳐 신고하는 제도이다.

또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법소정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이를 경정 등의 청구라고 한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게 된다.

* 관계법규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 2, 제49조



3. 임금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관계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재산이 정리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 대금이나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한 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그 매각대금에서 근로자들이 찾아갈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먼저 주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국세 등을 충당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등에 차이가 있으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나 다른 채권보다 항상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상의 임금채권과 국세 그리고 담보된 채권과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퇴직금 등 근로자가 받을 금액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세·일반채권 순이다. 그러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담보된 채권·근로자의 나머지 임금·국세·일반채권 순이다.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 최우선이고 국세·담보된 채권·근로자의 나머지 임금·일반채권 순이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임금 등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금을 받을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세무서장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다른 임금 등의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는 매각기일 전까지 세무서장에게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권자임이 확인되면 매각대금에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배당이의의 소

**Q**

A에게 밤을 돈이 있어서 A를 상대로 재판을 하여 승소한 뒤 A의 아파트를 경매시켰다. 배당기일 법원에 나갔더니 엉터리라고 생각되는 여러 채권자들의 배당신청이 있어서 즉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에 배당이의 소장을 냈다.

그뒤 배당이의 소송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이 나왔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다음기일을 확인해보니 재판이 이미 종결되었다고 한다.

단 한번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이럴수가 있는가?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판은 이미 종결된 것이 맞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이 허위 채권이거나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는데도 배당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배당실시가 일시정지되고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7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 소장을 내야만 한다.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반면에 피고측 즉, 배당요구를 하여 돈을 받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배당이의 소송이라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다시금 열리게 되어 별도의 소송비용 지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또 재판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게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596조에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소취하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소취하가 의제되면 배당이의의 소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어 원래의 배당표대로 배당하게 된다.

귀하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수도 있겠으나 배당이의의 소의 특수성으로 인한 특별규정을 귀하가 어긴 셈이 되므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첫 재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종복/변호사